

소통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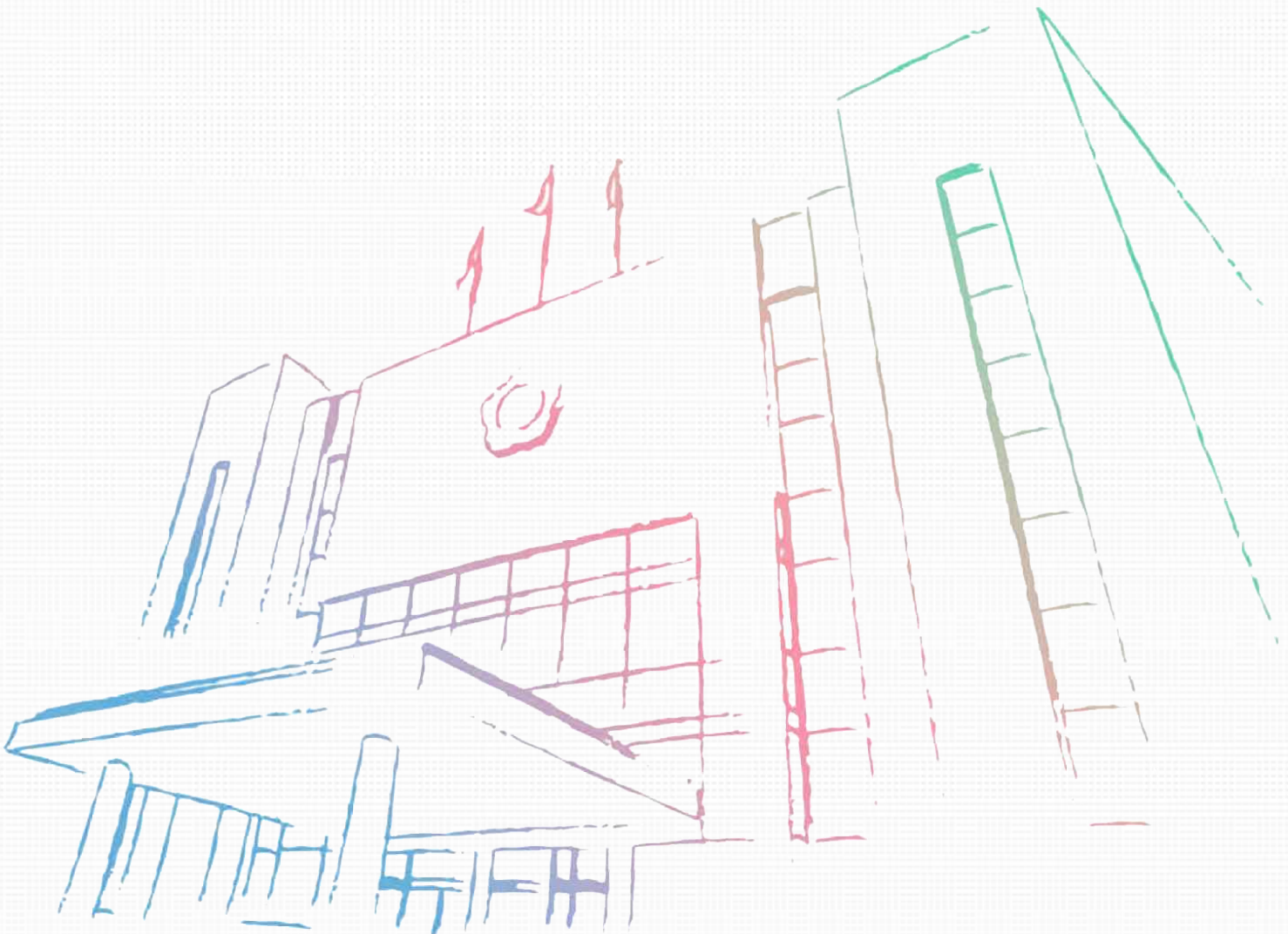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보

2025년 12월





목차

I 법령 제정·개정 동향

1.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	2
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개정)	5
3.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	7
4. 산림보호법 시행령(개정)	10
5. 환경보건법 시행규칙(개정)	13

II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	16
2. 인천광역시 천원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7
3.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지원 조례안	18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19
5. 전라남도 사범대학 부설 학교 지원 조례안	20
6. 용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21

III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1.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교육감으로 하여금 강연 등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교육청)	23
2. 청주시의회회 건의안, 결의안 및 청주시의회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에 대해 청주시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현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충청북도 청주시)	27
3. 구례군수가 전체 주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전라남도 구례군)	31
4.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국방경제 활성화와 국방경제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강원특별자치도)	37

IV 국외 입법례

1. 미국의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TAKE IT DOWN Act) 47

1. 법령 제정·개정 동향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2025.12. 4.] [법률 제20548호, 2024. 12.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을 조사하고 학업 지원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가정방문의 형태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여성가족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548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실태조사 중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적합한"을 "개개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청구 등"을 "청구, 출생확인신청 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5의2. 출생확인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제17조의2의 제목 중 "교육"을 "학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지원"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시설의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거주자를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거주자를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제2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5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 2025. 12. 21.] [법률 제20564호, 2024. 12.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아동 복지지원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보건복지부장관의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564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 및 시장"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그 밖에 지역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역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5. 12. 2.] [대통령령 제35885호, 2025. 12. 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는 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附帶費)를 포함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885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32조의2제1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도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 40억원
2. 시·군 및 자치구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 20억원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제49조의2제5호를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 인건비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제5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드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64조제1항제10호 중 "법 제53조제4항"을 "「지방회계법」 제15조제3호"로 한다.

제65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통합재정

수지비율"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순(純) 지출에서 순 수입을 뺀 금액"을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목의 금액을 나목의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지방세징수액 비율"이라 한다)

가. 해당 연도 분기별 지방세 누적 징수액(과오납환급금을 차감한 실제 누적 징수액을 말한다)

나. 최근 3년간 분기별 평균 지방세 누적 징수액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대값"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세 징수율"을 "지방세 징수액 비율"로 한다.

제65조의3제1항제1호 중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대값"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세 징수율"을 "지방세 징수액 비율"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대값"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세 징수율"을 "지방세징수액 비율"로 한다.

제69조제1항제1호 중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대값"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 12. 21.] [대통령령 제35679호, 2025. 7.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공포, 2025. 12. 2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던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산림휴양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이용하기 위하여 산림보호구역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유의 숲’ 조성을 허용하되, 치유의 숲시설 중 형질변경이 많이 수반되는 시설인 ‘숲속의 집, 치유센터, 유아숲체험원,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7월 2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대통령령 제35679호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4호, 제16호 및 제19호"를 "제14호 및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경우로서 치유의 숲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숲속의 집·치유센터·유아숲체험원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일반음식점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2조의7제1항 중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와 법 제45조의9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를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를 "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임명한다.

제32조의7제7항 전단 중 "각 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위원회"로,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지방산림청장"으로 본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7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5.] [환경부령 제1140호, 2024. 12. 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해성 관리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활동공간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을 추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기생충이 검출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097호, 2024. 12. 24. 공포)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명령을 해야 하는 시설 중 하나로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을 추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축·수선한 후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의 결과증명서에 기생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문

⊙ 환경부령 제1140호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24일

환경부장관 (인)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제2호, 제6호 및 제7호"를 "제2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별표 4 제2호라목6) 중 "기생충란"을 "기생충 및 기생충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4서식 뒤쪽 제2호가목2) 중 "프탈레이튬류(7종):"을 "프탈레이트류(7종):"으로 하고, 같은 쪽 제4호나목 중 "기생충란"을 "기생충 및 기생충란"으로 하며, 같은 쪽 제5호다목 중 "프탈레이튬류(7종):"을 "프탈레이트류(7종):"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II. 다른 사·도 조례 입법동향

*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시행 2025. 12.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1774호, 2025. 12. 2., 제정]

□ 제정이유

- 생활환경 및 대기오염, 식습관 변화 등으로 아토피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아토피질환의 예방 관리 및 안심학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 나. 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 비용 지원, 교육 홍보(안 제4조~제6조)

□ 관계법령

- 없음

□ 시·도별 현황

- 서울시 금천구, 영등포구, 성북구, 경기도,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남구, 수원시, 안양시, 의정부시, 의왕시

2

인천광역시 천원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시행 2025. 12. 8.] [인천광역시조례 제7660호, 2025. 12. 8., 제정]

□ 제정이유

- 인천시의 천원행복정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천원행복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나. 기금의 설치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기금의 존속 기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라. 기금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마. 기금의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7조).
- 사. 위원회의 구성, 임기, 회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시·도별 현황

- 없음

3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지원 조례안

[시행 2025. 12. 4.] [울산광역시조례 제3187호, 2025. 12. 4., 제정]

□ 제정이유

-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나. 치료비 등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관계법령

-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 시·도별 현황

- 충청남도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시행 2025. 12. 12.]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 제1938호, 2025. 12. 12., 제정]

□ 제정이유

-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이동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4조).
- 다. 경사로 설치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경사로 지원 신청 및 결정과 설치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마. 경사로 설치비용의 반환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바.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시·도별 현황

-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구, 부평구, 서구, 제주특별자치도, 파주시, 하남시

전라남도 사범대학 부설 학교 지원 조례안

[시행 2025. 12. 4.] [전라남도조례 제6441호, 2025. 12. 4., 제정]

□ 제정이유

- 사범대학 부속 중·고등학교 유치 및 설립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특화 인재 육성에 필요한 교원 양성 등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사범대학에 중학교·고등학교 부설을 지원할 경우 교육감 및 대학과 적극 협력하도록 도지사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고등교육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사범대학에 중학교·고등학교 유치 및 부설하는 경우에 적용토록 함(안 제4조).
- 다. 사범대학의 학교 부설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및 사업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 라. 사업 지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사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 시·도별 현황

- 없음

용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시행 2025. 12. 5.]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702호, 2025. 12. 5., 제정]

□ 제정이유

- 뇌병변장애인의 자립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및 안 제8조)
- 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도별 현황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충청남도, 파주시, 평택시, 과천시, 용인시

III.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 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1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교육감으로 하여금 강연 등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의견25-0395] 서울특별시교육청

□ 질의요지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교육감으로 하여금 강연 등(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주최·주관하는 각종 강연, 강의, 행사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 견

「지방자치법」에서는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면서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집행을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교육·학예 사무의 집행기관에 해당하는 교육감과 지방의회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각주: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추5138 판결 참조).

먼저, 강연 등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사무가 교육감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제5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자치법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8호에서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관장사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강연 등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사무는 교육감이 집행권을 가지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5. 5. 8. 의견제시 25-0164, 법제처 2019. 9. 26. 의견제시 19-0278 참조).

다음으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하 “서울시교육청조례안”이라 한다)에서 교육감은 강연 등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제3조)하면서, 교육감은 강연 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연 등 운영 및 관리 계획(이하 “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수요조사 실시, 정보 제공 및 홍보, 외부 강사 등을 섭외·

초청할 수 있다고 규정(제4조부터 제7조까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조례안은 교육감에게 강연 등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책 수립의 책무를 부여하면서, 관리 계획 수립·시행 등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라고 재량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교육감으로 하여금 특정 주제에 따른 특정 전문 강사 등을 초청하여 강연 등을 실시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재량에 따라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을 것이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이 교육감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는 곤란해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1. 6. 16. 의견제시 21-0413 참조).

다만, 서울시교육청조례안 제7조제2항에서 교육감이 외부 강사 등을 섭외·초청하는 경우 전문자격, 학력, 경력, 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대상자는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증을 통해 외부 강사 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검증된 외부 강사 등을 섭외·초청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서울시교육청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는 하나, 경력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외부 강사 등에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때는 경력 등의

검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청주시의회 건의안, 결의안 및 청주시의회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에 대해 청주시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현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의견25-0406] 충청북도 청주시

□ 질의요지

가. 청주시의회 건의안, 결의안 및 청주시의회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에 대해 청주시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현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청주시의회 의장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청주시의회 건의안, 결의안 및 청주시의회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에 대해 청주시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현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처리현황에 관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 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권한 중 건의안 및 결의안(이하 “건의안등”이라 한다)과 같은 지방의회의 의견 표명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서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권한은 아니지만,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이행하고, 주민의 의견을 지방의회가 대변하여 표명한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의안등은 “권고”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건의안등에 따른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4. 11. 28 의견제시 24-0411,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 2025, 139쪽 참조).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러한 건의안등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건의안등의 권고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4. 11. 28 의견제시 24-0411 참조).

또한, 지방의회 의원 개인에게는 발의권, 질문권, 토론권, 표결권, 원구성선거권이 있으나, 집행기관을 비판, 감시, 견제하기 위한 권한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있는 것이지 지방의회 의원 개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각주: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참조), 지방의회 의원 개인의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법령상 권한 범위를 넘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4. 1. 19. 의견제시 24-0003 참조).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폐회 중인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고,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위원회의 의결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3. 4. 26. 의견제시 23-0060, 법제처 2020. 3. 24. 의견제시 20-0049, 법제처 2019. 9. 17. 의견제시 19-0270 참조).

그런데, 지방의회의 의사로서 서류제출 또는 출석·답변 등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가 개회 또는 폐회 중인지와도 무관하게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방의회의 건의안등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또는 시정질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처리현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처리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서류제출이나 지방의회 출석·답변 의무에 대해 지방의회의 요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51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4. 1. 19. 의견제시 24-0003, 법제처 2020. 3. 24. 의견제시 20-0049, 법제처 2019. 9. 17. 의견제시 19-0270 참조).

따라서, 질의요지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3

구례군수가 전체 주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의견25-0396] 전라남도 구례군

□ 질의요지

- 가. 구례군수가 전체 주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각주: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말함.)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나. 「구례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제6조제4호의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전체 주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는 사항이 포함되는지?

□ 의 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각주: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질의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하 “통신사기피해보상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사무가 구례군의 소관사무에 해당해야 할 것이고, 소관사무에 해당하여 군수가 통신사기피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보험자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에 대한 대비와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제2조의2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제3조제1항) 등을 두고 있는데, 같은 법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 제6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수(보험계약자)가 전체 주민(타인)을 위하여 통신사기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례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이하 “구례군조례”라 한다)의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조례는 구례군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하며(제3조), 군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제6조),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제7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례군조례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같은 조례의 취지는 군수가 전자통신금융사기에 따른 피해 방지와 예방에 필요한 각종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 보호와 안전한 경제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될 수 있고(각주: 법제처 2017. 9. 6. 의견제시 17-0216 참조), 그 일환으로 군수가 전체 주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통신사기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사무 또한 지방자치단체(구례군)의 사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및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보조나 그 밖의公款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군수가 통신사기피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해당 보험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구례군 주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공금을 지출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각주: 법제처 2015. 2. 12. 의견제시 15-0021

및 법제처 2017. 9. 6. 의견제시 17-0216 참조),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려면 개별적인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데, 이 사안과 관련성이 있는 법률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통신사기피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 밖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개별 법률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각주: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구례군에서 재정적 상황, 통신사기피해보상보험의 가입 필요성과 해당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주민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해 보이고, 군수가 통신사기피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구례군에서 앞서 언급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판단을 하여 그 판단에 따라 조례 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구례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제4호가목에서 통신사기피해보상보험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발생한 피해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목은 통신사기 피해보상보험의 구체적인 보장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군수와 보험자가 체결하는 통신사기피해보상보험의 약관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을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내에 대하여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법제처 2025. 11. 25. 의견제시 25-0386 참조).

먼저, 구례군조례 제6조제4호에서는 군수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의 유형에 대해 군수에게 재량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6조제4호에서의 “그 밖에” 중 “그”는 앞에서 이미 이야기 하였던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고, “밖에”는 주로 체언이나 명사형 어미 뒤에 붙어 ‘그것 이외에는’ 등을 뜻하는 보조사(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인데, 같은 조 제6조에서는 군수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제1호),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제2호),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제3호)에 이어서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4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조 제4호의 의미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업 외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한 해석이라 할 것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업의 유형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에 대해 군수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업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국방경제 활성화와 국방경제 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의견25-0403] 강원특별자치도

□ 질의요지

- 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국방경제 활성화와 국방경제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나. (질의 가에서 가능하다면)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국방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다. (질의 나에서 가능하다면)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추진하는 국방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강원특별자치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국방경제와 관련한 기관 등이 추진하는 국방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 견

가. 질의 가부터 질의 라까지의 공통사항

이 사안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하 “강원자치도조례안”이라 한다)에서는 조례의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

국방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국방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조), 도지사가 추진하는 국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방경제기업 육성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제5조제1항), 도지사가 국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강원특별자치도 등이 출자·출연한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5조제2항), 도지사는 국방경제 활성화 및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는 국방경제 관련 기관이나 법인 등(이하 “국방경제관련기관등”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조).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호에 따라 지방정부는 “국방”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등의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도지사가 수행하려는 국방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무 등이 지방정부의 사무로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강원자치도조례안의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국방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도내 기업이 대한민국 국방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 경쟁력의 강화와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을 하고 있고(제1조) “국방경제”를 방위산업, 군수품의 조달·납품, 군급식 공급·운영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그리고, 도지사의 국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제3조), 도지사의 국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産)·학(學)·연(研)·

군(軍)·관(官) 협력방안 등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국방경제 활성화 계획의 수립 시행(제4조), 도지사의 국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위탁(제5조제1항 및 제2항), 도지사의 국방경제관련기관등에 대한 사업비 보조(제6조), 국방경제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국방경제 협의회의 설치(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강원자치도조례안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같은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도지사가 지역의 산업,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특화산업(국방 관련 산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국방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사업과 국방경제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정부 사무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제3호차목),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제3호파목)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제4호더목)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같은 법 제15조제1호에 따라 지방정부는 “국방”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등을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같은 법에서의 “국방” 본연의 의미와 같은 조례안에 따른 “국방경제”의 의미가 충돌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인데, 같은 법 제15조제1호 중 “국방”과 같은 조례안의 “국방경제”, “국방경제기업” 간 “국방” 용어의 중복으로 국가사무로 보여질 혼란을 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같은 조례안 제2조의 “국방경제”와 “국방경제기업”의 용어를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을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앞서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방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무에 대해 조례로 규정이 가능할 경우 도지사가 국방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무”란 지방정부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해 지방정부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합니다(각주: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추5054 판결 참조). 이에 관하여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안에서의 국방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무는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정부 사무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제3호차목),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제3호파목),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제4호더목)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도지사가 국방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 경우에도 질의 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같은 법 상의 “국방” 본연의 의미와 충돌될 우려가 없도록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자치도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는 도지사가 추진하는 국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방경제기업 육성 사업’(제1호) 및 ‘방위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제2호),

‘군수품 조달·납품 상용화 지원 사업’(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례안의 규정만으로는 도지사가 추진하는 국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같은 조례안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방위산업 발전법”이라 한다)에서 국가는 방위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조제1항),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5조제1항), 같은 법에서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같은 조례안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군수품 조달·납품 상용화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방위사업법」 제25조에서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장관의 지침에 의하여 군수품의 조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군수품을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항), 군수품은 국방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일괄적으로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2항), 마찬가지로 같은 법에서 군수품의 조달 등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위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 및 ‘군수품 조달·납품 상용화 지원 사업’의 경우 방위산업발전법과 「방위사업법」에 따라 국가(방위사업청장)가 각각 추진하는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 사무와 군수품의 조달 등에 관한 사무 등 국가사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점을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앞서 질의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지사가 국방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사업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자치도조례안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실시하는 국방경제기업 육성 사업(제1호) 등의 국방경제 활성화 사업의 경우 그 취지가 앞서 질의 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산업(지역특화산업) 및 지역경제의 육성·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보입니다.

따라서, 도지사는 국방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강원특별자치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같은 조례안 제5조제2항제1호에서는 도지사가 국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공립 연구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의 규정만으로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공립 연구기관’ 등 그 범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고, 도지사가 국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을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질의 라에 대하여

강원자치도조례안 제6조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국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방경제 활성화 및 지원 사업(제1호) 등을 수행하는 국방경제관련기관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및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정부가 기부·보조나 그 밖의公款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지사가 국방경제관련기관등이 수행하는 국방경제 활성화 및 지원 사업 등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4. 11. 28. 의견제시 24-0428 참조).

먼저,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 이 사안과 관련성이 있는 법령인 방위산업 발전법이나 「방위사업법」 등에서는 지방정부가 국방경제관련기관등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 밖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개별 법률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국방경제관련기관등이 수행하는 국방경제 활성화 및 지원 사업 등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조금(사업비 보조)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따라서, 국방경제관련기관등이 수행하는 국방경제 활성화 및 지원 사업 등의 사업비를 보조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법의 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적 상황, 국방경제관련기관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그 지원에 따른 다른 지역산업(지역특화산업) 간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 판단에 따라 조례 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IV. 국외 입법례

* 출처: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포털

미국의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TAKE IT DOWN)

국회법률도서관 최신 외국입법정보 [2025-24호] (2025. 12. 9.)¹⁾

- 미국 연방의회는 2025년 5월 19일에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TAKE IT DOWN Act)을 제정했다.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활용된 딥페이크를 악용하는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최초의 연방 법률이다. 법률 제정 즉시 시행된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과 2026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행정규제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번 법률은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삭제 절차를 제도화하고 플랫폼 책임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다. 온라인상 비동의 딥페이크 영상물 게시를 금지하고 플랫폼에 콘텐츠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국가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플랫폼에 콘텐츠 삭제를 직접 요청할 수 있으며, 플랫폼은 삭제요청을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콘텐츠를 삭제하고 그 복제본 삭제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도 취해야 한다.
- 우리나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최근 개정하여,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플랫폼의 영상물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향후 우리의 관련 법률을 개정할 때 참조할 수 있는 미국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주 제 어: 미국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TAKE IT DOWN Act), 딥페이크 영상물,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및 삭제 절차, 플랫폼의 삭제 의무

1) 출처 국회법률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https://law.nanet.go.kr/foreignlaw/newForeignLawissue/list.do?isMenu=Y>

- 최근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영상 기술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활용한 영상물과 촬영물 유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¹⁾
 - 주(州) 차원에서는 전체 50개 주와 워싱턴 D.C.가 '비동의 포르노물'(nonconsensual pornography) 또는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라 불리는 '비동의 성적 영상물'(nonconsensual intimate images) 유포를 금지하는 법률을 두고 있다.²⁾
 - 그러나 연방 차원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딥페이크 규제법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특히 여성·아동·청소년의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를 금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전미(全美) 차원의 일관된 규제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 이에 미국은 2025년 5월 19일에 「웹사이트 및 네트워크상 기술적 딥페이크 중지를 위한 법률」(Tools to Address Known Exploitation by Immobilizing Technological Deepfakes On Websites and Networks Act), 일명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TAKE IT DOWN Act, 이하 '동법')을 제정했다.³⁾ 동법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한 최초의 연방 법률이라는 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금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⁴⁾

- 동법의 핵심적 규제 대상물은 딥페이크 영상물인데, 동법은 이를 '디지털 위조물'(digital forgeries)이라고 칭하고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⁵⁾
 - '디지털 위조물'이란, 소프트웨어, 기계학습, 인공지능 및 그 밖에 컴퓨터로 생성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생성되는 '식별 가능한 개인'(identifiable individuals)⁶⁾에 대한 '성적 이미지 표현물'(intimate visual depictions)⁷⁾을 의미한다.

1)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Increasing Threat of Deepfake Identities", 2021.9.14

2) Ballotpedia News, "Forty-seven states have enacted deepfake legislation since 2019", 2025.7.22

3) Public Law 119-12, 2025 5.19. 동법은 기존 「통신법(1934)」(Communications Act of 1934)을 일부 개정한 법률이다. 「통신법(1934)」은 '미국 연방법전 제47편 제151조 이하에 편제되어 있는데, 동법 제정 후 제47편 제233조의 하위조항(h)와 제233a조가 각각 신설되었다.

4) 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 LLP, "Take It Down Act' Requires Online Platforms To Remove Unauthorized Intimate Images and Deepfakes When Notified", 2025.6.10.

5)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아래 2개 법률에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정의하고 있다.

①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1항에서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딥페이크영상 등"이라고 정의한다.

②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의1항에서 사이버폭력을 규정하는데,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라고 정의한다.

6) "식별 가능한 개인"이란, 성적 이미지 표현물 전부 또는 일부에 등장하고, 이러한 표현물과 관련하여 얼굴, 모습, 기타 구별되는 특징(고유한 모반, 기타 식별 가능한 특징 포함)이 표현되는 개인이라고 정의한다.

- 컴퓨터로 생성되거나 기술적인 수단을 이용하는 범위에는 실제 이미지 표현물을 각색, 수정, 조작, 변형하는 것도 포함된다.
- 또한 '디지털 위조물'은 합리적인 사람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식별 가능한 개인의 실제 이미지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일하게 보이는 이미지 표현물을 말한다.

● 동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연방 차원의 법적 구제방법이 충분하지 못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 학생인 경우, 학생이 소속된 학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 경찰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범죄 혐의가 있으면 범인·범죄 사실·증거를 수사할 수 있었지만, 해당 콘텐츠 삭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나 수단이 없었다.
- 딥페이크 영상물이 게시된 소셜미디어 등 플랫폼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삭제할 법적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⁸⁾ 딥페이크 영상물의 즉각적 삭제가 피해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외면하였다.

● 동법은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적, 사후적 규제체계를 확립하였고, 딥페이크 영상물 악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과 이에 따른 권리를 갖게 되었다.⁹⁾

- **형사처벌:**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또는 악용한 가해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며, 이에 관한 규정은 동법 제정 즉시 시행되었다.
- **행정규제:** 플랫폼은 더 이상 게시된 딥페이크 영상물을 방관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위한 직접 신고·삭제 절차를 구축하고 관련 콘텐츠를 삭제해야 하며, 이에 관한 규정은 동법 제정일로부터 1년이 도래하는 2026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7) '성적 이미지 표현물'이란, 다음의 이미지를 묘사하는 시각적 표현물을 의미한다. ① 개인의 노출된 생식기, 치부, 항문, 사춘기 이후 여성의 유두, ② 성적 신체 분비물이 개인의 신체 일부 위에 드러나 보이거나 개인의 신체 일부 위로 이동하는 이미지, ③ 개인의 신체로부터 배출되는 성적 신체 분비물이 드러나 보이거나 이동하는 이미지, ④ 개인이 노골적인 성행위에 참여하는 이미지. 미국연방법전 제15편 제6851조의 (a)(5)(A)

8) '미국연방법전 제47편 제230조의 (c)'에 따라, 일반적으로 플랫폼은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면제된다.

9)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he TAKE IT DOWN Act: A Federal Law Prohibiting the Nonconsensual Publication of Intimate Images", 2025.5.20.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TAKE IT DOWN Act)

1. 법률의 구성

- 동법은 총 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주요 내용
제1조 (약칭)	TAKE IT DOWN Act로 약칭
제2조 (형사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authentic) 성적 이미지 표현물뿐 아니라 '허위' 디지털 위조물도 금지 대상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범죄구성요건 완화 및 벌칙 상향 ·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등 합리적인 선의의 공개는 면책
제3조 (행정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은 삭제요청을 받은 후 48시간 이내 삭제 및 복제본 차단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 의무 · 플랫폼의 선의에 따른 접근 차단 또는 삭제는 면책 ·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를 단독 법집행기관으로 명시
제4조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이란, 이용자 생성 콘텐츠를 주로 활용하는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을 의미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이메일 등은 제외
제5조 (분리)	일부 규정 또는 그 개정사항이 집행 불가능하거나 무효라도 나머지 규정은 유효하게 존속

- 동법의 핵심은 제2조와 제3조이다.
 - 제2조는 모든 행위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명시하여 고의적 게시행위를 처벌한다.
 - 제3조는 플랫폼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데, 피해자를 위한 신고·삭제 절차를 구축해야 하며, 피해자가 플랫폼에 삭제요청을 하면 플랫폼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48시간 이내에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야 한다.

2. 형사처벌

- 금지행위: 제2조는 개인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이미지 표현물'을 고의로 게시하기 위해 컴퓨터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위협·강요·갈취를 목적으로 범행을 시도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로 협박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 ❶ **금지대상**: 금지 대상물을 '실제' 성적 이미지 표현물과 '허위' 디지털 위조물로 구분하는데, 디지털 위조물도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로서 금지하는 것이 핵심 사항이다.
- ❷ **피해자(성인 vs. 미성년자)**: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와 미성년자¹⁰⁾인 경우를 구분하고, 각 경우에 대해 서로 다른 범죄구성요건 및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 아래 표는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피해자 나이에 따른 범죄구성요건 및 벌칙		
구분	성인 피해자	미성년자 피해자
범죄 구성 요건	<p>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p> <p>① 행위자의 의도: 개인이 합리적 프라이버시를 기대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 행위자가 개인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을 획득·생성해야 함.</p> <p>② 비자발성: 개인은 공적, 상업적 상황에서 표현된 내용을 자발적으로 노출하지 않아야 함.</p> <p>③ 비공공성: 표현된 내용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어야 함.</p> <p>④ 피해 의도 또는 실제 피해: 관련 표현물이 피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갖고 있거나, 개인에게 심리적·재정적·명예 훼손적 피해를 가해야 함.</p>	<p>아래 요건만 충족해도 됨.</p> <p>① 행위자의 의도: 행위자는 다음 중 하나의 의도가 있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성년자를 학대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괴롭히거나 수모를 주려는 의도, 또는 사람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충족시키려는 의도
벌칙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병과 가능)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병과 가능)

- ❸ **예외**: 제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있는데, 법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법집행기관, 연방 정보기관의 합법적 권한에 따라 수행되는 조사·보호·정보 활동
 - '불법적 콘텐츠 또는 권유받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콘텐츠를 신고하기 위한 공개', '권유받지 않은 성적 이미지 표현물을 수취하여 지원·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공개' 등 합리적이고 선의에 따른 공개¹¹⁾

10) 동법에서 미성년자란 18세 미만의 개인을 의미한다.

11) 그 밖에 법집행관 또는 법집행기관에 대한 공개, 법적 절차와 연관되어 문서 제작·제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공개, 의학 교육, 진단 치료의 일환으로 또는 합법적인 의학적·과학적·교육적 목적의 공개, 법적·직업적 기타 합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개의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 개인을 합당하게 도우려는 의도에 의한 공개
- 개인 자신의 나체 또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에 연루된 디지털 위조물을 소지·게시하는 사람
- '아동 포르노' 또는 '아동 성적 학대에 대한 음란한 시각적 표현물'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성적 이미지 표현물 게시

● **해석규정:** 제2조에 대한 해석규정(rules of construction)으로 아래 2가지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 개인이 성적 이미지 표현물 생성에 동의했다고 하여, 이를 공개하는 데 동의한 것은 아니다.
- 개인이 성적 이미지 표현물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했다고 하여, 제2조 위반 혐의자가 이를 공개하는 데 동의한 것은 아니다.

3. 행정규제

● **플랫폼:** 제3조의 적용을 받는 플랫폼이란, ①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② (i) 메시지·비디오·이미지·게임·오디오 파일 등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를 위한 공간(forum)을 주로 제공하거나, (ii) 동의받지 않고 성적 이미지 표현물의 콘텐츠를 게시·구성·호스팅·제공하는 '웹사이트,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한다.¹²⁾

● 플랫폼의 의무사항

- **신고·삭제요청 절차 구축:** 플랫폼은 특정 개인이 등장하고 개인의 동의 없이 플랫폼상에 게시된 성적 이미지 표현물을 신고 및 관련 콘텐츠 삭제를 플랫폼에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2026년 5월 19일까지 구축해야 한다.
- **게시:** 플랫폼은 신고·삭제 절차에 관한 공지를 플랫폼상에 게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플랫폼의 책임 관련 정보 및 신고·삭제 요청서 제출 방법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다만, 플랫폼의 범위에서 다음은 제외한다 ①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자, ② 전자우편 ③ (i) 사용자가 생성하지 않고 미리 선택한 콘텐츠 위주로 구성되고, (ii) 모든 채팅·댓글·대화 기능이 미리 선택한 콘텐츠 제공에 부수적이거나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이에 의존하는 온라인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 삭제: 플랫폼은 개인이 성적 이미지 표현물 삭제를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가능한 신속하게, 그러나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콘텐츠를 삭제해야 하며, 관련 콘텐츠와 동일한 것으로 알려진 복제물을 확인·삭제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면책:** 개인이 성적 이미지 표현물이 불법적으로 공개되었다는 주장을 명백한 사실이나 상황에 근거하여 제기한 경우, 플랫폼은 관련 표현물을 선의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거나 삭제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관련 표현물이 궁극적으로 불법적으로 판정되는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 **법집행기관:** 연방거래위원회를 단독 법집행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 플랫폼이 동법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는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에 따른 불공정·기만행위(unfair or deceptive act or practice)에 해당한다.¹³⁾

- 연방거래위원회는 「연방거래위원회법」에 규정된 광범위하고 강력한 권한에 따라 법집행 수단을 활용하여 동법을 시행하고, 위반 시 행정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결론

● 우리나라는 다음 3가지 법률에서 미국의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에 상응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게시를 금지하고 있고,¹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삭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13) 미국연방법전 제15편 제45조, 연방규정집 제16편 제1장

14) 최근 우리 대법원은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 사진이나 일명 딥페이크 영상(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의 얼굴·신체 등을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특정 영상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성이나 혐오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 ...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25.8.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15) 법률 제20575호(2024.12.20. 일부개정), 법률 제20535호(2024.12.3. 일부개정), 법률 제20459호(2024.10.16. 일부개정), 법률 제20931호(2025.4.22. 일부개정), 법률 제20462호(2024.10.16. 일부개정)

우리 대법원 양형위원회(이하 양형위)는 불법합성 영상물(딥페이크) 범죄의 양형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양형위는 2025년 6월에 제139차 전체회의를 열어 제10기 양형위원회 2년 임기 동안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하고 기존 양형기준을 수정할 대상 범죄 총 8개를 선정했는데, 그 중 '디지털 성범죄'가 포함되어 있다. 양형위는 2027년 4월 26일까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설정·수정할 계획이다.

● 제22대 국회 출범 후, 우리 국회는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을 수차례 개정하여 딥페이크 제작·유포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¹⁵⁾ 또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게시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 범위에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복제물과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추가했다.¹⁶⁾

● 우리의 법률은 미국의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과 함께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 퇴치라는 동일한 입법 목적으로 동시대에 제정·개정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미국의 법률을 입법적으로 참조할 수 있다.

- 미국의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은 형사적 책임과 관련하여 연방법상 최초로 딥페이크를 의미하는 '디지털 위조물'을 정의하고 이를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특히 법집행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불법 콘텐츠 또는 권유받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행위를 신고하기 위한 공개', '권유받지 않은 성적 이미지 표현물을 수취하여 지원·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공개' 등의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면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또한 이번 법률은 행정규제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권리 보장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즉,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로 인한 피해자가 일차적으로 관련 콘텐츠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국가기관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플랫폼에 콘텐츠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플랫폼이 삭제요청을 받은 후 콘텐츠를 삭제해야 하는 시한을 48시간 이내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개인이 성적 이미지 표현물이 불법적으로 공개되었다는 주장을 명백한 사실이나 상황에 근거하여 제기한 경우' 플랫폼은 선의로 관련 표현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이를 삭제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16) 법률 제20534호(2024.12.3. 일부개정)

- ◆ 입법정보는 법률 제정·개정 주요사항, 타 시·도 조례 입법동향,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국외 입법례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 법령 입법예고 사항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법제처: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List.mo?mid=a10104010000>
 -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isOgYn=Y>

【문의】 입법정책담당관 ☎ 033-249-5709